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(중개정조례)(안)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개정(법률 제4797호, '94. 12. 22)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서 「읍장, 면장, 동장」을 삭제
- 지방자치법개정(법률 제4741호, '94. 3. 16)으로 별정직 읍·면·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

4. 주요골자

- 읍·면·동장 일반직화에 따른 관계조문 정리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
검토한바,

이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에 있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
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·면·동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지방별정직
공무원의 종류에서 제외 되었는바 종전에 별정직으로 하여오던 읍·면·
동장을 일반직화 하므로써

이에따른 현행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써
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.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